

의안번호	제 호	의결사항
의결 연월일	2023. . . (제 회)	

중 소 기 업 기 술 혁 신 촉 진 법 시 행 령
일 부 개 정 령 안

제 출 자	국무위원 ○○○ (중소벤처기업부장관)
제출 연월일	2023. . .

법제처 심사 전

1. 의결주문

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.

2. 제안이유

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개정에 따라, 법률에서 위임한 중소기업산학연협력센터(협력센터)의 설치·운영에 관한 사항을 시행령에 규정

3. 주요내용

- 가.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제11조제1항 각 호의 학교·기관 또는 단체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고시하는 바에 따라 협력센터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함(안 제9조의2제1항)
- 나. 협력센터의 업무로 협력 대상 중소기업 발굴, 협력 연구 기획 및 기술 중개·알선 등 연구지원, 협력 성과 조사·분석, 산학연 네트워크 구축 등을 규정(안 제9조의2제2항)
- 다. 협력센터를 설치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운영계획서 제출을 의무화(안 제9조의2제3항)
- 라.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협력센터의 운영 현황 조사를 위하여 협력센터를 설치·운영하는 학교·기관 또는 단체에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(안 제9조의2제4항)

4. 주요토의과제

없 음

5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 략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 해당사항 없음

라. 기 타 : 1) 신·구조문대비표, 별첨

2) 입법예고 추진 예정

3) 행정규제 :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예정

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

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9조의2 및 제9조의3을 각각 제9조의3 및 제9조의4로 하고, 제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9조의2(중소기업산학연협력센터의 설치·운영 등) ① 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중소기업산학연협력센터(이하 “협력센터”라 한다)를 설치·운영하려는 학교·기관 또는 단체는 중소기업 산학연 협력 지원에 필요한 인력과 시설 등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협력센터를 설치할 수 있다.

② 협력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.

1. 협력 대상 중소기업의 발굴 및 산학연 협력 수요조사
2. 산학연 협력 연구의 기획 및 기술의 중개·알선 등 연구 지원
3. 협력 성과 조사·분석 및 관리
4. 산학연 협력 네트워크 구축
5. 그 밖에 중소기업 산학연 협력 및 기술지도사업 지원을 위해 필요한 업무

③ 협력센터를 설치·운영하는 학교·기관 또는 단체는 협력센터를 설치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

사항을 포함한 협력센터 운영계획서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
④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협력센터의 운영 현황을 조사하기 위해 협력센터를 설치·운영하는 학교·기관 또는 단체에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.

부 칙

이 영은 2023년 12월 21일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u><신 설></u>	<u>제9조의2(중소기업산학협력센터의 설치·운영 등) ① 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중소기업산학협력센터(이하 “협력센터”라 한다)를 설치·운영하려는 학교·기관 또는 단체는 중소기업산학연 협력 지원에 필요한 인력과 시설 등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협력센터를 설치할 수 있다.</u> <u>② 협력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.</u> <u>1. 협력 대상 중소기업의 발굴 및 산학연 협력 수요조사</u> <u>2. 산학연 협력 연구의 기획 및 기술의 중개·알선 등 연구 지원</u> <u>3. 협력 성과 조사·분석 및 관리</u> <u>4. 산학연 협력 네트워크 구축</u> <u>5. 그 밖에 중소기업 산학연 협력 및 기술지도사업 지원을 위해 필요한 업무</u> <u>③ 협력센터를 설치·운영하는</u>

<u>제9조의2</u> · <u>제9조의3</u> (생략)	<u>학교 · 기관 또는 단체는 협력센터</u> <u>를 설치한 날부터 3개월 이내</u> <u>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</u> <u>여 고시하는 사항을 포함한 협</u> <u>력센터 운영계획서를 중소벤처</u> <u>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</u> <u>다.</u> ④ <u>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협력</u> <u>센터의 운영 현황을 조사하기</u> <u>위해 협력센터를 설치 · 운영하</u> <u>는 학교 · 기관 또는 단체에 관</u> <u>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</u> <u>다.</u> <u>제9조의3</u> · <u>제9조의4</u> (현행 <u>제9조</u> <u>의2 및 제9조의3과 같음</u>)
---	--

< 의안 소관 부서명 >

중소벤처기업부 기술개발과	
연 락 처	(044) 204 - 7765